2022년 세제개편안

- 기획재정부, 2022. 7

현재 조세의 모습 및 조세정책 여건

1 현황

□ (조세부담률) 과거 추이 뿐만 아니라 주요국에 비해서도 빠르게 증가

-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(24.3%)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, 최근 증가 속도는 OECD 총 38개국 중 3위*
 - * 조세부담률('15년 → '20년): (OECD) 24.1% → 24.3% 〈+0.2%p〉 (한 국) 17.4% → 20.0% 〈+2.6%p〉
 - ▶ '21년은 22.1%(잠정)으로 증가 속도는 더욱 빠른 상황
- 국세수입이 100조원 증가하기까지 과거에는 약 10년 정도 소요되었으나, 최근 2년만에 100조원 수준 증가*
 - * 국세수입(조원): ('01) 95.8 → ('11) 192.4 → ('20) 285.5 → ('22) 396.6(전망)

□ (세원별) 법인세 및 재산과세(상속·증여, 보유세·거래세)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

GDP 대비 세목별 세수비중(20년, %)

| | | 법인세 | | | | | |
|---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|
| | 소득세 | 답신세 | 세인파제 | 상증세 | 보유세 | 거래세 | 꼬미띄제 |
| 한국 | 5.3 | 3.4 | 4.0 | 0.5 | 1.0 | 2.4 | 6.8 |
| OECD 평균 | 8.3 | 2.7 | 1.9 | 0.1 | 1.1 | 0.5 | 10.6 |

- (소득세) 과세표준 구간 수(8개)가 다른 나라(OECD 평균 5.1개)에 비하여 많고, 최고세율 적용 기준*이 높아 일부 고소득층만 적용
 - * 1인당 GDP 대비 최고세율 적용 과표 배율: (우리나라) 26배, (OECD 평균) 5배
 - 최저세율 적용 과표는 '08년 이후 1,200만원으로 유지

- 최고세율(국세 45%, 지방세 포함 49.5%)은 OECD 평균(35.4%, 42.2%)보다 높으나, G7 국가 평균(42.4%, 49.7%)과 비슷한 수준
- ② (법인세) 대부분 국가가 단일세율(24개국) 또는 2단계 세율(11개국)로 운영하나, 우리나라 는 4단계 누진세율(10·20·22·25%)로 운영 중
 - 최저세율 적용 과표는 '08년 이후 2억원으로 유지
 - 최고세율(국세 25%, 지방세 포함 27.5%)은 OECD 평균(21.2%, 23.2%) 및 G7국가 평균(20.8%, 26.7%)보다 높음
- ❸ (상속·증여세) 증여세는 취득세 방식(수증자의 증여받은 자산 기준)·상속세는 유산세 방식(피상속인의 자산 총액 기준)으로 운영
 - * 상속세를 운영 중인 OECD 23개국 중 4개국(한국, 미국, 영국, 덴마크)만 유산세 방식, 나머지 19개국(일본, 독일, 프랑스 등)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운영
 - 최고세율(50%)은 OECD(평균 26.8%) 중 일본(55%)에 이어 2위 수준
- ④ (보유세·거래세) 거래세는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른 수 준*
 - * OECD 국가 GDP 대비 비중 순위('15년→'20년): 재산과세 10위 → 3위, 보유세 22위 → 16위
 - '20년 보유세 비중(1.04%)은 OECD 평균(1.06%)과 유사한 수준
- **6** (소비세) 부가가치세율(10%)은 OECD 평균(19.3%)의 절반 수준

□ (제도 운용)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여 조세원칙 훼손

-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의 제도(예: 투자·상생협력촉진세제,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등)가 일부 운영
- 대기업,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분법적 세제 운용으로 제도가 복잡해지 고. 과세 형평을 저해
-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세제를 활용한 결과 납세자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
 - ☞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원칙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필요

2 조세정책 여건

□ (경기 여건)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, 경기둔화 우려 확산

- 국제유가·원자재가격 상승 등 해외발 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
 - * CPI 상승률(%): ('21.2/4) 2.5 (3/4) 2.5 (4/4) 3.5 ('22.1) 3.6 (2) 3.7 (3) 4.1 (4) 4.8 (5)

5.4 (6) 6.0

- 우크라이나 사태, 공급망 차질·인플레이션 심화,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으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도 확산
 - * '22년 세계성장 전망 변화(%): [IMF] ('21.10월) 4.9 → ('22.1월) 4.4 → ('22.4월) 3.6 [OECD] ('21.12월) 4.5 → ('22.6월) 3.0

□ (구조적 여건) 경제 역동성 둔화 등 구조적 문제 누적

-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, 과도한 규제·정부개입 등이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상황
- 저출산·고령화가 지속 심화되는 한편,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 되면서 가업 승계 등 문제 대두
- 글로벌 최저한세.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 배분 등 조세의 국제화도 가속

□ (재정 여건) 재정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

- 최근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로 인해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지속 제기
 - * 관리수지(조원) : ('17)△18.5 ('19)△54.4 ('20)△112.0 ('21)△90.6 ('222차)△110.8 국가채무(조원) : ('17) 660.2 ('19) 723.2 ('20) 846.6 ('21) 967.2 ('222차) 1,068.8
- 저출산·고령화 등 우리 경제·사회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재정소요는 지속 확대
- ☞ 저성장 극복과 민생 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할 필요
- ♂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한편,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세입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 재편 추진

참고 - 세제개편 추진 경과

□ 다양한 건의 수렴 및 성과평가 등을 거친 후 대내외 논의를 통해 개정안 마련

- (건의 접수) 국세청, 관세청, 대한상의, 중소기업중앙회, 세무사회 등 24개 단체에서 세제개 편 건의사항 1.361건 접수
- ② (비과세·감면 평가) 일몰 도래 또는 신설 예정 조세지출에 대해 심층평가(일몰 도래)*·예 비타당성평가(신설 예정)** 24건 진행
 - * 감면액 年300억원 이상 의무심층평가 + 주요 조세지출항목 임의심층평가 : 23건
 - ** 감면액 年300억원 이상 특례 신규 도입시 예타 의무 : 1건
- ❸ (대내 논의) 주요 쟁점에 대해 세제실 내 조세정책심의회* 10여 차례 개최

- * 세제개편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행 (참석자) 세제실장, 국장 4명, 조세정책과장, 조세분석과장 등
- ④ (대외 의견 수렴) 경제·시민단체, 전문가 그룹, 학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

| 구 분 | 내 용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· 관계기관 간담회 | · 금융단체, 경제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|
| · 세제발전심의위원회* | · 세제개편 방향 및 세목별 주요 과제 논의 * 소득·기업·재산·소비·국제조세·관세 등 6개 분야로 구성 |
| *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* | · 중장기적 시야에서 경제·재정여건을 전망하고, 정책방향 점검 * 조세 분야 및 경제·사회·복지·환경·통일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 |
| ▶ 공청회 | 주요 개정과제에 대해 4차례* 공청회 실시 * 1」법인세 과세체계 개편(6.22), 2」종합부동산세 개선(6.28), 3」상속·증여세제 개편(6.28), 4」글로벌 최저한세 도입(6.28) |

□ 조기 시행 필요 과제는 선제적으로 개정 완료

○ '22년 상반기 중 시행이 필요한 과제는 개정 완료ㆍ시행 중

〈 '22년 상반기 세제개편 주요 내용 〉

- ① 유류세 한시 인하 및 인하 폭 확대
- ② LNG 등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적용 및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 지속 확대
- ③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양도소득세 개편
- ④ 승용차 개별소비세 30% 인하 적용기한 연장
- 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%p 상향조정 및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
- 「민생안정대책」('22.5월), 「새정부 경제정책방향」('22.6월) 등 각종 대책에서 관련 세제 개편 과제 기 발표

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

- ◇ □ 경제 활력 제고와 □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
 - []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
 - → 민간·기업·시장의 역동성 및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
- ② 세부담 적정화·정상화 → 민생 안정 및 국민 삶의 질 개선
- ◇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노력도 강화

목표

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-세수의 선순환

추진 과제

추진 기반

경제 활력 제고

세제의 합리적 재편

✓ 기업경쟁력 제고

- ✓ 일자리·투자 세제지원 강화
- 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
- ✔ 금융시장 활성화

민생 안정

세부담 적정화·정상화

- ✓ 서민·중산층 세부담 완화
- ✓ 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
- ✓ 지역 균형발전 강화
- ✔ 부동산세제 정상화

+

조세인프라 확충

재정의 지속가능성·세제의 공정성 제 고

- ✓ 소득파악·세원양성화 기반 마련
- ✓ 조세회피 관리 강화
- ✓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

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

납세자 수용성 제고

- ✔ 납세자 권익 보호
- ✔ 납세편의 제고

Ш

세제개편 상세 내용

〈 주요 개정내용 〉

1. 경제 활력 제고

기업경쟁력 제고

- ·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
- ▶ 해외·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
- ▸ 투자·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,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

일자리·투자 세제지원

·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

· 증권거래세 인하

- ·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
- ·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, 분할납부 대상 확대

원활한 가업승계 지원

▶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 특례 실효성 제고, 납부유예 제도 도입 ·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합리화

금융시장 활성화

·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및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

2. 민생 안정

서민·중산층 세부담 완화

- ·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
- · 근로·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
- ·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
-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

중소기업 지원

- ·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
-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

지역 균형 발전강화

·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 세액감면 확대 등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

부동산세제 정상화

- ·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
- ·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

3. 조세인프라 확충

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

- ·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
- ▸ 불요불급한 비과세·감면 제도 정비

조세회피 관리 강화

-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
- ·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

글로벌 최저한세 도입

·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(15%)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추가 과세권 부여

4.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

납세자 권익 보호

- ·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
- ·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 경정청구 제도 개선

납세편의 제고

- · 여행자 휴대품·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
-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

1 경제 활력 제고

◇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정비하고, 가업승계 애로를 완화하는 한편, 금융시장 활성화 지원 강화

1) 기업경쟁력 제고

□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(법인법)

- (세율)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% → 22% 로 인하
- **②** (과표구간)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 → 2~3단계로 단순화
 - ■중소·중견기업(매출액 3,000억원 미만)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(현재 2억원)까지 10%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 완화

과세표준(단위: 억원)

현 행

개 정 안

| ~ 2 | |
|-------------|--|
| 2 ~ 5 | |
| 5 ~ 200 | |
| 200 ~ 3,000 | |
| 3,000 ~ | |

| 10% | |
|---------|--|
| 20% | |
| 22% | |
| 25% | |

10% (중소·중견기업) 20% 22%

□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(법인법)

-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하여 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소득의 국내 유 입 유도
- (이중과세 조정 방식) 외국납부세액공제 → 익금불산입

| 해외자회사 | | | 국내모회사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|
| 현 행 | 해외자회사 소득에 대해 현지 법인세율로 법인세 과세 | 배당 | 배당금을 모회사 소득에 포함 하여 국내 법인세율로 과세 (현지 납부세액은 공제) |
| 개정안 | (상 동) | | 배당금을 모회사 소득에 불포함 |

■ (해외자회사 범위 확대) 지분율 25% 이상 → 10% 이상

□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(법인법)

○ 기업 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를 단순화하고, 자회사 배당 촉진을 위해 익금불산 입률을 상향하여 이중과세 조정 확대

| | | 현 | 행 | | 개경 | 정 안 |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|
| 구 분 | 일반법인 | | 지주회사 | | (일반-지주 구분 없음) | | |
| | 지분율 | 익금불산입률 | 지분율 | 익금불산입률 | 지분율 | 익금불산입률 | |
| | 100% | 100% | 40~100% | 100% | | | |
| 상장법인 | 30~100% | 50% | 30~40% | 90% | 50% 이상 | 100% | |
| | 30% 미만 | 30% | 30% 미만 | 80% | , 0 | 80% | |
| | 100% | 100% | 80~100% | 100% | 30~50% | , | |
| 비상장법인 | 50~100% | 50% | 50~80% | 90% | 30% 미만 | 30% | |
| | 50% 미만 | 30% | 50% 미만 | 80% | | | |

※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년 유예 기간 적용

□ 이윌결손금 공제한도* 상향 (법인법)

- * 이월된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%(중소기업 100%) 한도로 공제
-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(60% → 80%)

□ 투자·상생협력촉진세제* 일몰 종료 (조특법)

- * 투자·임금·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20% 과세
-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규제성 조세인 투자·상생협력촉진세제는 '22년말 일목 종료

□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* 합리화 (상증법·상증령)

- *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여 거래 시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과세
- (사업부문별 과세 허용)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*하도록 허용하여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
 - * 현재 법인 전체의 세후영업이익 기준으로 증여이익 산출
- ② (과세제외 거래 합리화) 수출목적 국내 거래*에 대하여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 에서 제외
 - * 현재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·외 거래 과세 제외(대기업은 국외 거래만 제외)

□ 연결납세제도* 적용대상 확대 (법인법)

- *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
-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결납세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를 모회사 지분율 $100\%(완전지배) \rightarrow 90\%$ 이상으로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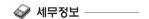
□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 (관세법)

○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고용 안정을 위해 특허기간을 연장하고, 특허갱신은 대·중소기업 모두 2회까지 가능토록 조정

| 구분 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특허기간 | 5년 | 10년 |
| 특허갱신 | ■ [대기업] 1회(5년×1회) | ■ [대기업] 2회(5년×2회) |
| | ■ [중소•중견] 2회(5년×2회) | ■ [중소•중견] 좌동 |

□ 국내제조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* 계산방식 합리화 (개소령)

- *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시 가격, 국내물품의 경우 제조장 반출 시 가격으로 과세
- 국내제조물품의 제조장 반출가격을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 추계*하여 계산하는 방식 인정
 - *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별로 국세청에서 결정·고시



□ 관세 과세가격 등 결정 시 적용환율을 기준환율로 변경 (관세법)

민생대책 ※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

- 수입비용 경감 등을 위해 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환율을 '외국환매 도율*'에서 '기준화율**'로 변경
 - * 외국환은행이 기업 등 고객에게 외국환을 팔 때 수수료 등이 할증되어 적용되는 환율
- **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의 시장평균환율

2) 일자리·투자 세제지원 강화

<일자리>

□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(조특법)

-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'통합고용세액공제'로 개편
- (고용지원 세제 단순화)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 편의 제고
- (청년 고용 활성화) 청년 연령 범위를 15~29세 → 15~34세로 현실화
- (취약계층 지원 및 일가정 양립 강화) 정규직 전환자, 경력단절여성,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

혀 행

-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(모든 기업)
 - : 고용증가인원 × 1인당 세액공제액

| | 공제액 (단위: 만원) |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|
| 구 분 | 중소(| (3년) | 중견 | 대기업 | |
| | 수도권 | 지방 | (3년) | (2년) | |
| 상시근로자 | 700 | 770 | 450 | - | |
| 청년 정규직, | | | | | |
| 장애인, 60세 | 1,100 | 1,200 | 800 | 400 | |
| 이상 등 | | | | | |

개 정 안

- <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>
- 기본공제
 - : 고용증가인원 × 1인당 세액공제액

| | 공제액 (단위: 만원)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
| 구 분 | 중소(| 3년) | 중견 | 대기업 |
| | 수도권 | 지방 | (3년) | (2년) |
| 상시근로자 | 850 | 950 | 450 | - |
| 청년 정규직, | | | | |
| 장애인, 60세 이상, | 1,450 | 1,550 | 800 | 400 |
| 경력단절여성 등 | | | | |

-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(중소)
 - : 고용증가인원(2년) × 사용자분 사회보 험료 × 공제율(일반 50%, 청년·경력단 절여성 100%)
 - * 청년 범위(①, ②): 15~29세
-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(중소, 중견)
 - :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(2년) × 공제율(중소 30%, 중견 15%)
-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(중소, 중견)
 - : 정규직 전환 인원(1년) × 공제액(중소 1,000, 중견 700)
-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(중소, 중견)
 - :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(1년) × 공제율(중소 30%, 중견 15%)

* 청년 범위: 15~34세

■ 추가공제

: 인원수 × 1인당 세액공제액(1년)

| 구 분 | 공제액 (단위:만원)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|
| 十 世 | 중소 | 중견 | |
| 정규직 전환자, | 1 200 | 000 | |
| 육아휴직 복귀자 | 1,300 | 900 | |

□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(조특법)

- (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*) 특례 적용 기간(국내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) 제한을 폐지하여 우수인력의 국내 장기 근무 유도
 - * 종합소득세율(6~45%) 대신 단일세율(19%, 비과세·감면은 미적용) 선택 적용 가능
- ② (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*)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(50%) 기간을 5년 → 10년으로 확대
 - * 엔지니어링 기술제공자 등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5년간 소득세 50% 감면
- ③ (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*) 소득세 감면(50%) 기간을 5년 → 10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
 - *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복귀 시 5년간 소득세 50% 감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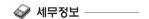
□ 근로소득증대세제* 재설계 (조특법)

- *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 20%, 중견 10%, 대기업 5% 세액공 제
- 임금 증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위하여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3년 연장
- 대·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고려하여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

<투자>

□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(조특법)

국정과제



새경정

- (공제율 상향) 반도체·배터리·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 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(+2%p)
 -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50% 수준으로 상향

| ㄱ ㅂ | | スっし 日* | | |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|--|
| T T | 대 | 중견 | 중소 | 증가분* | |
| 일 반 | 1% | 3 → 5% | 10% | 20/ | |
| 신성장·원천기술 | 3% | 5 → 6% | 12% | 370 | |
| 국가전략기술 | 6 → 8% | 8% | 16% | 4% | |

- * (당해연도 투자액 직전 3년평균 투자액) × 증가분 공제율(3%·4%)
- ② (범위 확대) 반도체 등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

□ 대학(원)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신설 (조특령)

○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기업 이 지출하는 계약학과 운영비를 포함

□ 유턴기업 지원세제 요건 완화 (조특령)

○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해외사업장 양도·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·증설 시 완료기한 연장(2년 내 → 3년 내)

□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* 확대 (조특법)

- * 영화 및 TV프로그램(드라마·오락 등)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%, 중견기업 7%, 중소기업 10% 세액공제
- 영상 콘텐츠의 문화·경제적 파급력을 감안하여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
-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OTT*콘텐츠 제작비용을 세 액공제 대상에 추가
 - * 온라인동영상서비스(OTT, Over-the-Top Service)

□ 해저광물 탐사·채취 기계 등 관세·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(조특법)

○ 안정적 자원 확보 및 대륙붕 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해저광물 탐사·채취 기계 등에 대한 관세·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3년 연장

<창업·벤처>

□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(조특법)

- ① (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)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 →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누적한도(5억원) 신설
- ② (분할납부 대상 확대) 코스닥·코스피 상장 벤처기업*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허용
 - * 현재 비상장·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적용

□ 창업·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(조특법)

- (적용기한 연장) 창업·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과세특례*의 적용기한을 3 년 연장
 - * 1 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
 - 21 일반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출자금액 5% 세액공제
 - 31 엔젤투자자 양도차익 비과세, 투자시 투자금액 소득공제
- ② (과세특례* 요건 완화) 벤처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자 지분 확대(증자대금의 10% → 30%)
 - * 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및 신주+구주(증자대금의 10% 범위 내에서의 엔젤투자자 지분)

3) 윈활한 가업승계 지윈

□ 가업상속공제* 실효성 제고 (상증법·상증령)

- *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
- (적용대상 확대)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 기업의 범위 확대
 - 매출액 0.4조원 미만 → 매출액 1조원 미만
- ② (공제한도 상향)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상향
 - 마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: 200억원 → 400억원
 20년 이상: 300억원 → 600억원
 30년 이상: 500억원 → 1,000억원
- ③ (피상속인 요건 완화)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 완화

- 최대주주 & 지분 50%(상장법인은 30%) 이상 10년 보유
 → 최대주주 & 지분 40%(상장법인은 20%) 이상 10년 보유
- ④ (사후관리 완화)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①사후관리기간을 단축(7년 → 5년)하고, ②업종·③고용·④자산유지 요건 완화

| 구 분 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1 사후관리기간 | • 7년 | · 5년 |
| ② 업종 변경 범위 | ·중분류(표준산업분류) 내 변경 허용 | ·대분류 내 변경 허용 |
| ③ 고용 유지 의무 | · ●&② 유지 ● (매년) 정규직 근로자 수 80%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% 이상 ② (7년 통산) 정규직 근로자 수 100%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% 이상 | |
| ④ 자산 유지 의무 | · 가업용 자산의 20%(5년 내 10%) 이상 처분 제한 | ㆍ20%(5년 내 10%) → 40% |

□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* 한도 확대 등 (조특법)

- *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 제 후 10%(30억원 초과분은 20%) 세율로 과세
- 가업상속공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 확대, 업종변경 제한 완화 및 사후관리 기간 단축
- (과세특례 한도 확대) 100억원 → 최대 1,000억원*
 - *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: 400억원, 20년 이상: 600억원, 30년 이상: 1,000억원
 - 기본공제를 확대(5억원 → 10억원)하고, 20% 세율 적용 과표 구간도 상향(30억원 → 60억원)
- (업종변경 제한 완화) 중분류 내 → 대분류 내
- (사후관리 기간 단축) 7년 → 5년
 - 대표이사 취임 기한도 단축(증여일부터 5년 내 → 3년 내)

□ 가업승계 시 상속·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(상증법·상증령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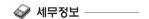
- 가업상속공제 방식(상속)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(증여)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
 - (대상기업) 중소기업
 - (적용방식)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·수증자가 양도·상속·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·증여세 납부유예*
 - * 상속인·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(상속·증여)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
 - (사후관리) 고용·지분유지 요건 적용, 업종유지 요건 면제

| 구 분 | | 가업상속공제(상속, 개정안)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(증여, 개정안) | 납부유예(신설) |
|------------|------|---|--|
| 적 | 용 대상 | ▸ 중소·중견(매출액 1조원 미만)기업 | • 중소기업 |
| 적용 혜택 | | ・(상속) 상속재산 공제(이월과세) ・(증여) 증여 시 저율 과세 → 상속시점에 상속세 정산 | ・양도·상속·증여 시까지 상속세 납부유예 ・양도·상속·증여 시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→ 상속시점에 상속세 정산 |
| 한 도 | | • 400~1,000억원 | ·(없 음) |
| 사후관리 기간 | | ▶ 5년 | ·(좌 동) |
| رار د ا | 업종유지 | ▶ 대분류 내 변경 허용 | ▶(면 제) |
| 사후 과리 | 고용유지 | ▶5년 평균 90%(상속공제만 적용) | · 5년 평균 70% |
| 한 년 | 지분유지 | ▸ 상속·증여받은 지분 유지 | ▸ (좌 동) |

□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 (상증법·상증령)

-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상관없이 연부연납기간을 단일화하고, 거치기간을 확대(5년 → 10년)
 - (대상기업) 전체 중소·중견기업
 - (적용방식) 가업승계시 공제 후 잔여가업재산에 대해 20년 (10년 거치 10년 분할납부 가능) 연부연납 적용

| 구 분 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가업상속재산 비율 50% 미만 | · 10년(3년 거치 7년 분할납부) | · 20년(10년 거치 10년 |
| 가업상속재산 비율 50% 이상 | · 20년(5년 거치 15년 분할납부) | 분할납부) |



□ 영농상속공제 제도* 합리화 (상증법)

- * 2년 이상 농업,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대상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2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가액 공제
- 농어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되, 가업상속공제와의 형평성을 감 안하여 피상속인 요건 등 강화
- (공제한도 확대) 20억원 → 30억원
- (피상속인 영농종사기간 강화) 2년 → 10년
- (공제배제 신설) 피상속인·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·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(사전)·추징(사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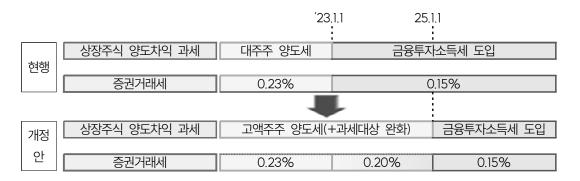
□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*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 확대 (조특법)

- * 자녀가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30억원(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)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% 세율로 과세
- 적용한도를 확대(30억원 → 50억원, 10명이상 신규고용시 50억원 → 100억원)하고 중고 자산 일부 인수 시에도 창업으로 인정

□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* 합리화 (상증법)

- *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·증여하는 경우 20% 할증 평가(중소기업 주식 제외)
- 「공정거래법」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(20%) 폐지

4) 금융시장 활성화



□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(소득법)

○ 최근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,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('23년 → '25년)

□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(소득법·소득령)

-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유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과세기준 완화
- (지분율 요건 삭제) 보유한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분율 요건 삭제
- (보유금액 상향) 연말 주식 매도 완화 등을 고려하여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→ 100억원으로 상향
- (대주주* 판정기준 현실화) 세부담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 판정시 본인만 계산 * 대주주 → 고액주주 명칭 변경

혀 행

| | 지분율 | 보유금액 | 판정기준 | |
|-----|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
| 코스피 | 1% | | 친족등 | |
| 코스닥 | 2% | 10억원 | | \Rightarrow |
| 코넥스 | 4% | | 포함 합산 | |



| 지분율 | 보유금액 | 판정기준 |
|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**** | 100억원 | 본인만 계산 |

□ 증권거래세 인하 (증권령)

-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'23년 코스피·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세율* 인하
 - * ('22년) 0.23 → ('23년) 0.20 → ('25년) 0.15%

□ 가상자산 과세* 2년 유예 (소득법)

- * 가상자산의 양도·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(세율: 20%)
- 최근 가상자산 시장 여건,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 과세 시행 2년 유예('23년 → '25년)

□ 개인투자용 국채*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 (조특법)

- * 일반 국고채와 달리 매입자격이 개인으로 제한되고, 만기(10·20년)까지 보유 시 원금과 가산 금리가 반영된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상품
- 국민 장기저축 지원 및 국채 수요 증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 14% 분리과세 특례 신설 ※ '21.5월 제출된 「국채법」 개정안 통과 전제

□ 비거주자·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·양도소득 비과세 (소득법·법인법)

- 비거주자·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·양도소득에 대해 소득·법 인세를 비과세하여 국제적 기준*에 맞는 투자 인프라 구축
 - * 세계국채지수(WGBI) 편입국가 대부분이 비거주자·외국법인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

2 민생 안정

◇ 서민·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,
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

1) 서민·중산층 세부담 완화

〈 금년 상반기 旣 추진사항 〉

- ◇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여 긴급 민생안정 대책 신속 추진
- (1) 휘발유·경유·LPG부탄 유류세 30% 인하 > 최대 인하 폭(37%)으로 확대
- ② 긴급할당관세 적용 대상 확대
- ③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%p 상향 조정
- ④ 단순가공식료품(김치, 간장, 단무지 등) 부가가치세 면제(~'23년)
- ⑤ 커피·코코아 원두 수입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(~'23년)

□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(소득법)

● (과표구간) 서민·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

| 현 행 | | 개 정 안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|
| 과세표준(단위: 만원) | 세율 | 과세표준(단위: 만원) | 세율 | |
| ~ 1,200 | 6% | ~ 1,400 | 6% | |
| 1,200 ~ 4,600 | 15% | 1,400 ~ 5,000 | 15% | |
| 4,600 ~ 8,800 | 24% | 5,000 ~ 8,800 | 24% | |
| 8,800 ~ 15,000 | 35% | | | |
| 15,000 ~ 30,000 | | | | |
| 30,000 ~ 50,000 | 40% | (좌 동) | | |
| 50,000 ~ 100,000 | 42% | | | |
| 100,000 ~ | 45% | | | |

- ② (근로소득세액공제*) 총급여 1.2억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축소(50만원 → 20만원)
 - *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%, 130만원 초과분 30% 세액공제

□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(소득령)

○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(월 10만원 → 20만원)

□ 근로·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 (조특법)

-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·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
- (재산요건) 2억원 미만 → 2.4억원 미만
- (최대지급액) 10% 수준 인상

| | 근로장려금 | | | | |
|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
| | 현 행 개 정 안 | | | 자녀장려금 | |
| 단 독 | 150만원 | 165만원 | | 현 행 | 개 정 안 |
| 홑벌이 | 260만원 | 285만원 | 자녀 | 70만원 | 80만원 |
| 맞벌이 | 300만원 | 330만원 | _1명 당_ | 7066 | |

□ 주거비 부담 완화 (소득법·조특법)

- (월세)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% → 15%*까지 상향
 - * (총급여 5,500만원 이하) 12% → 15%, (총급여 5,500~7,000만원) 10% → 12%
- ② (주택임차자금) 주택임차자금(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)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(연 300만원 → 400만원)
- ❸ (관리비) 읍·면지역, 전용면적 135m2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
 - * 85m2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지역에 관계없이 영구면세 중
- ④ (기숙사비) 대학생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 3년 연장

□ 교육비·양육비 세제지원 확대(소득법·조특법·개소법)

- (교육비) 대학입학 전형료,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(15%) 대상에 추가
- ② (양육비) 영유아용 기저귀·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
- ③ (기타) 다자녀 가구*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(300만원 한도)
 - * (적용대상)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

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* 지원 강화 (조특법)

- * 총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~40% 소득공제 (신용카드 15%, 현금영수증·체크카드·도서공연등 30%, 전통시장·대중교통 40%)
-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,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하여 지원 강화

| (단위 | : 만원) | 현 행 | | | 개 정 안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
| 총급여 기준 | | 7천만원 | 7천만원 | 1.2억원 | 7천만원 | 7천만원 |
| | | 이하 | ~1.2억원 | 초과 | 이하 | 초과 |
| 기본공제한도 | | 300 | 250 | 200 | 300 | 250 |
| | 전통시장 | 100 | 100 | 100 | | 200 |
| 추가공제 | 대중교통 | 100 | 100 | 100 | 300 | 200 |
| 한도 | 도서·공연 등 | 100 | - | - | 300 | - |

- **2** 하반기(7.1~12.31)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(40% → 80%)
- **❸** 도서 · 공연 등 사용분*(30% 공제율)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
 - * 현재 도서구입비, 공연관람료,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 등 포함

□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)

-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(하이브리드·전기·수소차)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* 적용기한 2년 연장
 - * 감면한도: 하이브리드차(100만원), 전기차(300만원), 수소차(400만원)

□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(소득법, 조특법)

- (세액공제 한도 상향)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상향
 - 연금저축 400만원(퇴직연금 포함 700만원) → 600만원(900만원)
- ② (추가납입 확대)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IRP(개인형퇴직연금) 추가납입(1억원 한도) 허용

□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(소득법)

- 퇴직자 지원을 위해 근속연수공제*를 확대하여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(퇴직금 5천만원인 경우 10년 근속 시약 50%, 20년 근속 시 100% 경감)
 - *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계산

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(소득법)

-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* 기간 1년 연장('21년 → '22년)
 - * 세액공제율: (1천만원 이하) 15% → 20% (1천만원 초과) 30% → 35%

□ 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 (조특령)

- 조특법 내 청년 연령범위를 15~29세에서 15~34세로 확대·통일*
 - * 통합고용세액공제(신설),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,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등

□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)

- (농어민) 영농·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3년 연장
- ② (도서지역) 도서지역의 안정적 기초생활 지원을 위해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 세·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
- ③ (운송업)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차량 구입시 부가가치 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
- ④ (고령층·장애인) 고령층 등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* 3년 연장
 - *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시 소득·법인세 3년 100% + 2년 50% 감면

2) 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

□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*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)

- * 「상가임대차법」 상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%(종합소득금액 1 억원 초과 시 50%)를 세액공제
-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('22년 → '23년)

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* 적용기한 연장 등 (조특법)

- * 48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·업종·규모별로 소득세·법인세 5~30% 세액감면
-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회복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 한을 3년 연장

| 0 | 세무정보 | |
|---|------|--|
|---|------|--|

○ 과세형평 등을 위해 전기통신업,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 (10% 감면) 폐지

□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* 연장 (조특법)

- *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세금(재산가액이 없거나 재산가액이 강제 징수비에 미달)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할납부(최대 5년) 허용
- 적용대상 사업자 범위를 '22.12.31. 이전 폐업 후 25.12.31.까지 재기(재창업·취업)한 자로 폐업기한과 재기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

□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*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)

- * 대·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10% 세액공제
- 대·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 한 3년 연장

□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신설 (조특법)

○ 기업의 중고자산 기증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시 시가의 10% 세액공제 혜택 부여

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*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)

- * 중소·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(대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1차 이하 협력기업이 동일한 할 인율로 활용하는 제도)를 통해 중소·중견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급의 0.15~0.5% 세액공제
- 중소·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제지 원 적용기한 3년 연장

□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*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)

- * 농·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 적용(과세표준 20억원 이하 9%, 20억원 초과 12%)
- 농어민 등 지원을 위하여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

□ 기업 등 납세의무자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확대 (관세법)

-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지원 등 편의 제고를 위해 기업 등 동의 하에 관세청이 과세정보를 금 융기관 등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
 - * (예) 수출 중소기업이 무역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수출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출할 필요 없이 관 세청에서 은행에 관련 정보를 직접 제공

3) 지역 균형발전 강화

□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(조특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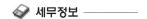
- (적용기한 연장)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*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
 - * 11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·법인에 대한 소득·법인세 세액감면
 - 21 대도시 공장의 대도시 외 이전 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특례
 - 31 법인 본사의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특례
- ② (지방이전 세액감면 확대) 낙후도가 높은 지역, 고용·산업위기지역 등*으로 기업(공장·본사) 이전 시 감면혜택 대폭 확대
 - * 「국가균형발전법」에 따른 성장촉진지역, 인구감소지역 및 「고용정책 기본법」에 따른 고용위기지역, 「지역산업위기대응법」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
 - 7년 100% + 3년 50% → 10년 100% + 2년 50% 감면

지방이전 세제 개정안

| 구분 | 해당 지역 | 감면기간 |
|----|---|------|
| 1 | 수도권 (과밀억제권역 外 지역), 지방의 광역시, 중규모도시 등 | 5+2년 |
| 2 | 기타 지역 | 7+3년 |

| | 구분 | 해당 지역 | 감면기간 |
|----------|----|---|-------|
| | 1 | 수도권 (과밀억제권역 外 지역), 지방의 광역시, 중규모도시 등 | 5+2년 |
| → | 2 | 지방광역시·중규모도시 내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·산업위기지역 기타 지역 | 7+3년 |
| | 3 | 성장촉진지역, 인구감소지역, 고용·산업위기지역* * 단, 수도권·지방광역시 ·중규모도시 등은 제외 | 10+2년 |

* 🔲 : 현행 대비 감면혜택 확대 지역



4) 부동산세제 정상화

〈 금년 상반기 旣 추진사항 〉

- ◇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선제적으로 개정 > '22.5.10일(양도분)부터 소급 적용
- 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
 - ②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·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
 - ③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(1>2년, 전입요건 폐지)
- ◇ 임차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
- ①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
 - ②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요건 완화
 - ③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
- ◇ '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(100 > 60%)

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(종부세법)

● (세율) 세부담 적정화,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

(단위:%)

| 고내비즈 | '1013 이저 | | | '21년 | | ᄱᄭ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|
| - 시 <u>부</u> 군 | 18년 이신 | 일 반 | 다주택 | 일 반 | 다주택 | 계정인 |
| 3억원 이하 | 0.5 | 0.5 | 0.6 | 0.6 | 1.2 | 0.5 |
| 3~6억원 | 0.5 | 0.7 | 0.9 | 0.8 | 1.6 | 0.7 |
| 6~12억원 | 0.75 | 1.0 | 1.3 | 1.2 | 2.2 | 1.0 |
| 12~25억원 | 1.0 | 1 / | 1.0 | 1.6 | | 1.3 |
| 25~50억원 | | 1.4 | 1.8 | 1.0 | 3.6 | 1.5 |
| 50~94억원 | 1.5 | 2.0 | 2.5 | 2.2 | 5.0 | 2.0 |
| 94억원 초과 | 2.0 | 2.7 | 3.2 | 3.0 | 6.0 | 2.7 |

- * 법인 : (현행) 일반 3.0% 다주택 6.0% 단일세율 → (개정안) 2.7% 단일세율
- **②** (세부담상한) 현행 일반 150% · 다주택 300% → 150%로 단일화

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(종부세법)

1 (일반) 현행 6억원 → 9억원* ('23년부터 적용)

- * '06년 이후 기본공제금액 조정이 없었던 점, '18~'22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(63.4%) 등 감안
- **②** (1세대 1주택자) 현행 11억원 → 12억원* ('23년부터 적용)
 - *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('22년 17.2%), 양도소득세와의 고가주택 기준 통일

□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 (조특법)

- ※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
- '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하여 3억 원 특별공제 적용
 - *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 → 14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

□ 고령자·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(종부세법)

- ※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
-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·장기보유자에 대해 해당 주택 상속·증여·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
 - * (요건) **1**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& **2**1세대 1주택자 & **3**총급여 7천만원 이하(종합 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) & **4**종부세 100만원 초과

□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 (종부세법)

- ※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
- **①**일시적 2주택, **②**상속주택, **③**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(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)

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

| 구 분 | 적 용 요 건 | | | |
|--|---|--|--|--|
| 일시적 2주택 | ▶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| | | |
| 상속주택 | (저가주택 또는 소액지분)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가액요건 :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, 非수도권 3억원 이하지분요건 : 40% 이하(기타) 5년간 주택 수 제외 | | | |
| 지 방 저가주택 ▶ ●1세대 2주택자 & ❷공시가격 3억원 이하 & ❸소재지 요건* * 수도권·특별자치시(읍·면지역 제외), 광역시(군지역 제외) 외의 | | | | |

□ 주택임대소득 과세* 고가주택 기준 인상 (소득법)

- *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월세 임대소득 과세
-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 \rightarrow 12억원으로 인상

□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* 연장 (조특법)

- * 등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(85㎡ 이하)인 6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% 이내로 인상한 경우 해당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·법인세 감면
-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·법인세 감 면 적용기한 3년 연장

3 조세인프라 확충

◇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고,국제 합의를 기반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국내 입법화 추진

1) 소득파악 및 세윈양성화 기반 마련

□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(소득법·법인법)

- (제출주기 단축) 소득기반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
 - (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) 반기별 → 월별 제출
 - (기타소득* 간이지급명세서) 연 1회 → 월별 제출 * 강연료.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
- 2 (가산세 부담 완화)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납세협력비용 경감
 -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(1%) 보다 낮은 0.25% 적용
 - 간이지급명세서를 종전대로 제출하더라도 6개월간 가산세 면제(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1년간 면제)

□ 전자(세금)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(부가령·소득령)

○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공급가액(수입금액) 1억원 → 8,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

- *('24.7월 시행)
- * '23.7월부터 2억원 →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

□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(소득령)

- 현금매출 비중, 건당 현금거래 금액이 높은 13개 업종*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(현재 112개 업종)에 추가
 - * 백화점, 대형마트, 자동차중개업 등

□ 판매·결제 대행·중개자료 제출의무 강화 (부가법·부가령)

- 자료제출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(2천만원) 및 제출대상자 확대*
 - * (현행) 결제대행업체, 전자금융업자 등 (개정안) 인터넷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판매·결제를 중개하는 사업자(국세청장 고시) 추가

□ 특수관계 거래 시 증명자료 제출의 실효성 제고 (관세법)

- 성실한 신고·납부 유도를 위해 특수관계자인 수입자가 과세·증명자료 거짓 제출 시 신고 물품의 과세가격 불인정*
 - * 현재 과세·증명자료 미제출 시에만 신고하는 과세가격 불인정
- 세관장의 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특수관계자인 수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

□ 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 거래정보 입수 근거 마련 (관세법)

○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관세청장이 플랫폼 기업 등에 전자상거래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□ 국세 및 관세 등 체납자의 수입물품 압류 후 매각 근거 마련 (관세법)

- 국세·지방세·관세 등 강제징수를 위해 세관장이 압류한 외국 물품에 대해 매각 및 국고귀 속* 근거 마련
 - * 세관장이 압류한 외국 물품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관세 및 체납세액 충당 금을 납부토록 통지 후 미이행 시 국고 귀속

□ 불요불급한 비과세·감면 제도 정비 (조특법)

- (정비원칙) ●정책목적 달성, ❷정책효과 미흡, ❸세출예산과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조세감면제도를 우선적으로 폐지·축소
- (정비대상 제도) 금년 일몰도래 제도 중 총 10건 일몰 종료 추진
 - * 연도별 일몰 종료 건수: ('18) 7건, ('19) 4건, ('20) 9건, ('21) 9건

| | 정비대상 제도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|
| 2 |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|
| 3 |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|
| 4 |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|
| 5 |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|
| 6 |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|
| 7 |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|
| 8 |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|
| 9 |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|
| 10 | 중소·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에 대한 관세 감면 |

2) 조세회피 관리 강화

□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* 합리화 (상증법)

- * 국가·시·도 지정문화재,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는 상속세 비과세, 국가 등록문화재, 문화재 자료 등은 양도 시까지 상속세 징수유예
- 문화재 유지·보존을 유도하고, 상속세 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에서 징수유예로 과세방식 전환
- 상속세 비과세 → 상속세 징수유예 + 양도 시 상속세 징수

□ 양도소득세 이월과세* 제도 합리화 (소득법)

- * 배우자·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
-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확대(증여일부터 5년 이내 → 10년 이내)

□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(소득령)

-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 및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를 확대하여 업무용승용 차의 사적 사용 관리 강화('24년 시행)
- (가입대상) 전문직·성실신고확인대상자 → 전체 복식부기의무자
- (미가입시) 1대를 초과하는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% → 100% 필요경비 불산입*
 - * 전문직·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경우 시행 후 2년간('24·'25년) 50% 불산입 적용

□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 (국기법)

○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·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수 준을 상향(최대 2,000만원 → 최대 1억원)

□ 명의대여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* 특례 신설 (국기법)

- *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원칙
-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확정일부터 1년 이내까지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처분 가능
- ②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, 50억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상속·증여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안 후 1년까지 부과제척기가* 인정
 - * 상속·증여세 부과제척기간 : 10년(부정행위 등의 경우 15년)

□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* 한도 상향 (관세법)

- * 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휴대품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%(15만 원 한도) 경감
- 휴대품 반입 증가에 따라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대상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 경감액 한도 상향(15만원 → 20만원)

□ 관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 신설(관세법)

○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관세 체납자에 대해 세관장이 주무관청에 관련사업의 정지·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□ 관세 회피 목적 타인 명의 사용행위 처벌조항 신설(관세법)

-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*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
 - * 현재 관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 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3)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(국조법)

- ◇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계적인 합의를 거쳐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('24년 시행)
- (개요)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(15%) 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
 - 해외 자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, 모회사가 추가세액을 모회사 소재지국에 납부(소득산입 규칙)
 - 소득산입규칙 미적용시* 해외 자회사들이 추가세액을 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(소득산입보완 규칙)
 - * ①최종모기업이 해당 소재지국에서 저율과세 되거나, ②모기업 소재지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등
- ② (적용대상)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7.5억 유로 (약 1조원)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
- ❸ (과세액)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(=조정조세/조정소득*)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(15%)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과세**
 - * 조정조세 :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법인세비용을 기초로 계산한 세액 합계 조정소득 :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당기순손익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소득 합계
 - ** 추가세액 = (최저한세율 국가별 실효세율) × 과세표준1」
 - 1 조정소득에서 해당 국가내 유형자산가액 및 급여액 합계액의 5%를 차감한 금액
- 4 (신고)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에 신고 필요(첫 해는 18개월)

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

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를 통하여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 수용성을 확보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

1) 납세자 권익 보호

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(부가법)

- 수입거래에서 수정신고·경정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수정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 확대
- 착오·경미한 과실 등으로 당초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발급 허용
 - → 위법·부당, 동일 신고오류 반복 등을 제외하고 발급

□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(소득법, 법인법)

-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세재화 공급 시*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 신설('23.7월 시행)
 - *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·용역 공급의 경우 공급자가 부도·폐업 등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 확인 하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

□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* 대상 확대 (국기법)

- *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 조정을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제도(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)
-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간 권리구제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·징수 납부자도 경정청구가 가능*하도록 개선
 - *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신고·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 허용

□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(국기법)

- 판결 등으로 그 대상이 된 과세표준·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·세액 조정 필요 시도 경정청구 사유*에 포함
 - * 현재 판결 등으로 그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

□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 연장 (환특법)

○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청구 기간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 등으로부터 2년→5 년으로 연장

2) 납세편의 제고

□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(관세칙)

-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 및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
- 600달러(기본) + 술 1병(1ℓ, 400달러 이하)·담배 200개비·향수 60mℓ
 - → 800달러(기본) + 술 2병(2ℓ, 400달러 이하) (※ 담배·향수는 현행과 동일)

□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(조특법·제주도면세점규정)

-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 및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맞춰 제주도 지 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
- 600달러(기본) + 술 1병(1ℓ, 400달러 이하)·담배 200개비
 - → 800달러(기본) + 술 2병(2ℓ, 400달러 이하) (※ 담배는 현행과 동일)

□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및 납부지연가산세 규정 정비 (국기법·인지법)

-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납부기한*을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연장
 - * 현재 법령상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. 과세문서 작성 당일로 운영
- ❷ 부동산소유권 이전 증서를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에서 제외*
 - * 현재 등기소에서 등기요건으로 인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므로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더라 도 성실납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

□ 중간예납 의무* 면제대상 확대 (법인법)

- * 상반기 분 세금을 8월 우선 납부한 후 다음 연도 3월 법인세 신고시 정산(12월 말 법인 기 준)
-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상향 조정(30만원 미만 → 50만원 미만)

□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* 체계 개편 (관세령)

- * 단일간이세율(20%, \$1,000이하) + 물품별 간이세율(20%~55%, \$1,000초과)
- 단일간이세율을 폐지*하여 모바일 전자신고 활성화 및 통관편의 제고
 - * 세율이 상이한 물품 간 면세·간이세율 적용순서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불합리 개선
- 모바일 전자신고를 통해 최저세액 자동 산출이 가능해져 물품검사 절차 생략과 통관시간 단축 가능(모바일 신고→QR코드 태그→모바일고지·납부)
- 단일간이세율 폐지로 인한 세액 증가 방지를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 인하*
 - * 인하율은 FTA 체결 확대 등으로 낮아진 실효관세율을 감안하여 결정

□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(소득법·법인법)

- (기부금)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별도 명칭이 없는 세제혜택 부여 기부금을 1」특례/2」 일반 기부금으로 명칭 재부여
 - 11 (소득 50% 한도 기부금) 국가·지자체, 국방헌금, 이재민 구호금품, 학교·병원 등
 - 21 (소득 10% 한도 기부금) 사회복지·문화·예술·교육·종교·자선·학술 등
- ② (접대비) 기업의 통상적·정상적 업무활동이나,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"접대비" 명칭을 '24년부터 "업무추진비"로 변경
 - * 업무추진비의 세법상 인정 범위는 현행 접대비와 동일하게 적용

Ⅴ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

1 세수효과

- □ 금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는 △13.1조원
- (연도별) `23년 △6.4조원, `24년 △7.3조원으로 `24년에 더 큰 영향
- (세목별) 소득세 △2.5조원, 법인세 △6.8조원으로 소득세·법인세가 전체 세수효과의 71%를 차지

2 세부담 귀착

(단위: 조원)

| | 개 인 서민 중산층1」 | 고소득층 | 甘山 | 인 중소·중견기업 | 기타2」 | 합 계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
| △3.4 | △2.2 | △1.2 | △6.5 | △2.4 | △3.3 | △13.1 |

- 11 전체 임금소득자 평균의 200% 이하인 자
- 21 외국인·비거주자·공익법인 등 귀착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

V

추진일정

- 1 개정대상 법률 : 총 18개
- □ 내국세(15개)
- 국세기본법,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상속세 및 증여세법, 부가가치세법, 개별소비세법, 주세법, 농어촌특별세법, 국세징수법, 조세특례제한법,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, 조세범처벌절차법, 종합부동산세법, 인지세법, 교육세법
- □ 관세(3개)
- 관세법, 관세사법,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

2 추진일정

- □ 7월 21일(목) :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
- □ 7월 22일(금) ~ 8월 8일(월) : 입법예고(17일간)
- □ 8월 18일(목) : 차관회의 □ 8월 23일(화) : 국무회의
- □ 9월 2일(금) 이전 : 정기국회 제출

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·재정환율

| | 통 | 화 | | 명 | 7월 20일 | 7월 21일 | 7월 22일 | 7월 25일 | 7월 26일 | 7월 27일 | 7월 28일 |
|-----|------|-----|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| | | | (수) | (목) | (금) | (월) | (화) | (수) | (목) |
| | 달 | | 러 | (USD) | 1314.90 | 1308.60 | 1312.10 | 1311.70 | 1311.00 | 1310.00 | 1312.80 |
| 일 | 본 | | 엔 | (JPY) | 951.34 | 946.14 | 956.17 | 962.26 | 960.47 | 957.15 | 962.57 |
| 영 | 국 파 | 운 | 드 | (GBP) | 1578.54 | 1566.72 | 1574.06 | 1573.65 | 1579.95 | 1327.16 | 1596.36 |
| 711 | 나 다 | 달 | 러 | (CAD) | 1021.68 | 1015.17 | 1019.23 | 1015.56 | 1020.19 | 1017.44 | 1024.10 |
| 홍 | 콩 | 달 | 러 | (HKD) | 167.50 | 166.70 | 167.17 | 167.10 | 167.02 | 166.89 | 167.25 |
| 위 | 안 | | 화 | (CNH) | 194.82 | 193.88 | 194.01 | 193.74 | 193.71 | 193.84 | 194.14 |
| 유 | 로 | | 화 | (EUR) | 1345.73 | 1332.42 | 1341.69 | 1339.38 | 1339.78 | 1327.16 | 1339.65 |
| 호 | 주 | 달 | 러 | (AUD) | 907.81 | 900.58 | 909.22 | 907.37 | 911.67 | 910.06 | 918.43 |
| 싱 | 가 폴 | 달 | 러 | (SGD) | 944.85 | 939.04 | 943.99 | 944.45 | 945.51 | 942.89 | 949.69 |
| 말리 | 베이시이 | 가링7 | 트 | (MYR) | 295.48 | 293.94 | 294.39 | 294.63 | 294.38 | 293.99 | 294.45 |